

신체손해사정사·보험계리사 1차 시험대비
보험업법

정인식 지음



제 2024BD 호

합격증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은 2024년 시행 신체
손해사정사 제 2 차 시험에 합격하였
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2024년 월 일



금융감독원 장





보험업법과 보험업법 시행령 위주로 출제되었던 경향에서 최근에는 기존 출제경향에 시행규칙까지도 확대되어 출제가 되고 있지만 100점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 시험에서 수험생들이 효과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기출문제의 경향이 조문을 중심으로 옳은 것과 틀린 것을 찾는 유형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로 문제의 난이도가 초창기에 비해 높아지긴 했지만 보험업법은 1차 세 과목중 가장 고득점을 목표로 할 수 있는 과목이지만 2차 시험과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 공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장 효과적인 공부방법은 조문과 함께 기출문제를 포함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풀면서 문제 속에서 조문의 옳고 그름을 체크하면서 공부하는 것이며 가장 단기간에 고득점을 올릴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물론 1차시험을 합격해야 2차시험을 응시할 수 있지만 1차시험에 투자하는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2차시험을 준비할 체력을 비축해 놓아야 합니다.

이 교재에서는 각 장의 시작부분에 보험업법 조문을 수록하였고 시행령 및 관련 조항은 내용중에 정리하여 수험생들이 공부하는데 최소의 시간을 들여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내용을 그렇게 구성하였습니다.

기출문제를 포함한 문제를 많이 풀고 다독하는 것만이 수험생들의 1차 과목의 합격을 담보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장기간 레이스에 시작한 1차과목에서부터 최종단계인 손해사정사 자격증 취득까지 체력관리 잘하시고 쉽게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 교재 한권으로 보험업법에 대해서는 충분하다고 생각되며 수험생들도 믿고 함께 하면 본인이 바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손해사정사의 문턱에 들어선 수험생들의 목표를 이루시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저자 정인식



1. 최근 10년간 1차시험(절대평가) 접수자, 합격자, 합격률 현황

연도	접수자	합격자	합격률
2023년	5,238	1,717	32.7%
2022년	4,809	1,795	37.3%
2021년	5,217	1,485	28.4%
2020년	5,221	1,405	26.9%
2019년	4,583	1,667	36.3%
2018년	4,947	1,644	33.2%
2017년	4,926	825	16.7%
2016년	4,351	1,224	28.1%
2015년	4,169	1,507	36.1%
2014년	4,481	802	17.9%

2. 최근 10년간 2차시험(상대평가) 접수자, 응시율, 합격률, 커트라인 현황

연도	접수자 (명)	응시자 (명)	응시율 (%)	합격자 (명)	합격률 (%)	커트 라인 (점)	최고 득점 (점)	합격자(%)		
								20대	30대	40대 이상
2023년	3,037	홈페이지 수험자료실 참고하세요								
2022년	3,075	2,150	69.9	340	15.8	55.00	71.67	28.6	39.8	31.6
2021년	2,981	2,114	70.9	343	16.2	53.50	67.92	28.7	41.9	29.4
2020년	3,121	2,229	71.4	325	14.6	51.25	65.50	38.3	41.3	20.4
2019년	3,249	2,290	70.5	328	14.3	50.42	68.75	36.0	43.8	20.2
2018년	3,177	2,232	70.3	409	18.3	50.83	69.25	32.6	44.2	23.3
2017년	2,786	1,892	67.9	381	20.1	44.42	67.89	32.2	45.1	22.7
2016년	3,323	2,180	65.6	470	21.6	50.25	76.17	28.6	44.8	26.6
2015년	3,247	2,097	64.6	501	23.9	44.08	71.67			
2014년	2,739	1,816	66.3	591	32.5	42.33	74.45			

3. 1TOP손해사정전문학원의 First & Only

1.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스마트 수험지원 시스템 → 특허청 특허출원(홈페이지 참조)	온라인모의고사 응시시스템(1차과목), 온라인첨삭 전용시스템(2차과목), 완강업로드 서비스, 합격에 최적화한 커리큘럼, 스마트밴드 가입 시스템, 상설상담소 운영 등 1TOP학원에서만 가능한 수험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2. 저렴한 수강료	반값 수준의 착한 가격으로 수험생 여러분들의 지갑을 지켜드리겠습니다.
3. 최강의 1타 강사진	1타 강사를 찾아 이 학원, 저 학원을 헤매고 다니지 않도록 해드리겠습니다.
4. 국내 최다 콘텐츠 제공	선택에 만족하고 후회하지 않게끔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5. 1타 장학생 제도 운영	장학생 제도를 정례화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1topacademy.com / 뒷표지 QR 코드) 참조

【연간 강의 커리큘럼】

구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1차	기본이론	실전 문제풀이					
2차		기본이론			핵심정리 & 기출문제풀이		

4. 시험에 떨어지는 수험생 유형(빼 때리는 불합격 10계명)

- ① 시간을 못내거나 시간을 안내는 사람 - 자격증 취득이 우선 순위가 아닌 사람이다. 우선 순위부터 정해서 시험을 포기하든지 시간을 내든지 양자택일하라.
- ② 합격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사람 - 자기성찰과 손해사정사에 대한 vision, 자격증 취득의 목적부터 세워라.
- ③ 공부계획표, 수험전략없이 무턱대고 공부하는 사람 - 네비게이션도 없이 운전하는 격이고 눈감고 운전하는 격이다.
- ④ 공부의지, 공부패턴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 - 중단없이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효과적인 동기부여를 통해 공부의 지속성을 유지하라.
- ⑤ 시험을 앞잡아 보거나 짝어서 공부하는 사람 - 시험앞에 겹쳐해질 때 합격한다. 교만하거나 요행을 바라지 마라.
- ⑥ 이 책 저책, 이 자료, 저 자료, 이 학원 저 학원 강의를 모두 섭렵하려는 사람 - 수집생이 되지 말고 수험생이 되라.
- ⑦ 교재정독 소홀히 하는 사람 - 기본서 다독이야말로 기본중의 기본이다. 기본서 다독으로 기본기부터 확실하게 다져라.
- ⑧ 이해 없이 덮어놓고 단순 암기식으로 공부하는 사람 - 단순 무식하게 암기해서 절대 합격못한다.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하라.
- ⑨ 지문 탐독(해석)을 엉뚱하게 하거나 제대로 못하는 사람 - 탈락자 중 지문탐독 잘못해서 떨어지는 사람이 가장 억울한 사람이다. 혹시 난독증이라면 난독증 치료부터 먼저 하라.
- ⑩ 강사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 - 본인만 손해다. 강사를 믿고 강사를 믿는 자기 자신을 믿을 때 비로소 합격의 문이 열린다.

※ 위 항목 중 2개 이상 해당되면 거의 99.9% 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1개 항목에만 해당돼도 합격은 쉽지 않습니다. 유념하셔서 시험에 합격하는 유형의 수험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국연합모의고사 (1·2·3회차)					
전국연합모의고사 (1회차)	실전 문제풀이, 실전 모의고사				전국연합모의고사 (2회차)	

5. 손해사정사 시험과목 및 선발예정인원

(1) 시험과목

제1차 시험

구분	1 교시	2 교시
	10 : 00~11 : 20(80분)	11 : 50~12 : 30(40분)
손해사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업법 •보험계약법(상법 중 보험편) 	손해사정이론

제2차 시험

구분	시간	과목
재물 손해사정사	1교시(10 : 00~11 : 30,90분)	회계원리
	2교시(11 : 50~13 : 20,90분)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상법 해상편 포함)
	3교시(14 : 20~15 : 50,90분)	책임·화재·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차량 손해사정사	1교시(10 : 00~11 : 30,90분)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대물배상 및 차량손해)
	2교시(11 : 50~13 : 20,90분)	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과 실무
신체 손해사정사	1교시(10 : 00~11 : 30,90분)	의학이론
	2교시(11 : 50~13 : 20,90분)	책임·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3교시(14 : 20~15 : 50,90분)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
	4교시(16 : 10~17 : 40,90분)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2) 합격자 결정방법 및 선발예정인원

구분	제1차시험	제2차시험	
손해사정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단, 매과목 40 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중 전과목 평균 점수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 원 이내에서 합격자 결정)	선발예정인원 : 50명
			선발예정인원 : 110명
			선발예정인원 : 340명

※ 선발예정인원은 2023년 제46회 손해사정사 시험 선발예정인원 기준입니다.



PART 01

보험업법

CHAPTER 01 총칙	2
제1절 목적	2
제2절 정의	2
제3절 보험계약의 체결	11
CHAPTER 02 보험업의 허가 등	12
제1절 보험업의 허가	12
제2절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	15
제3절 허가의 요건 등	17
제4절 예비허가	21
제5절 상호 또는 명칭	23
제6절 자본금 또는 기금	23
제7절 보험업 경영의 제한	26
제8절 보험회사의 경영업무	28
제9절 보험회사의 부수업무	30
제10절 경영업무·부수업무의 회계처리	32
제11절 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 등	32
CHAPTER 03 보험회사	34
제1절 삭제	34
제2절 주식회사	34
제3절 상호회사(相互會士 ; Mutual Company)	43
제4절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	55
CHAPTER 04 모집	59
제1절 모집종사자	59
제2절 모집 관련 준수사항	79
제3절 보험계약자의 권리	89

CHAPTER 06	자산운용	91
	제1절 자산운용의 원칙 • 91	
	제2절 자회사 • 106	
CHAPTER 06	계산	111
CHAPTER 07	감독	116
	제1절 보험회사에 대한 일반관리 • 122	
	제2절 보험 감독 및 제재(제131조~제136조, 시행령 제73조~제74조) • 128	
CHAPTER 08	해산·청산	133
	제1절 해산 • 133	
	제2절 청산 • 139	
CHAPTER 09	관계자에 대한 조사	142
CHAPTER 10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	146
CHAPTER 11	보험 관계 단체 등	151
	제1절 보험협회 등 • 151	
	제2절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 • 157	
CHAPTER 12	보칙 및 벌칙	166
	제1절 보칙 • 166	
	제2절 벌칙 • 171	

CHAPTER 01 총칙	178
CHAPTER 02 보험업의 허가 등	190
CHAPTER 03 보험회사	210
CHAPTER 04 모집	228
제1절 모집종사자	228
제2절 모집 관련 준수사항	255
제3절 보험계약자의 권리	279
CHAPTER 05 자산운용	285
제1절 자산운용의 원칙	285
제2절 자회사	292
CHAPTER 06 계산	298
CHAPTER 07 감독	303
CHAPTER 08 해산·청산	320
CHAPTER 09 관계자에 대한 조사	331
CHAPTER 10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	335
CHAPTER 11 보험 관계 단체 등	340
CHAPTER 12 보칙 및 벌칙	353

PART

01

보험업법



제1절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보험업법 제정 목적

①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②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③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④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授受)하는 계약(「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등 보험계약자의 보호 필요성 및 금융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생명보험상품 :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 나. 손해보험상품 :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다목에 따른 질병·상해 및 간병은 제외한다)으로 발생하는 손해(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 다. 제3보험상품 :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2. “보험업”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引受),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한다.
 3. “생명보험업”이란 생명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손해보험업”이란 손해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제3보험업”이란 제3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6. “보험회사”란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7. “상호회사”란 보험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보험계약자를 사원(社員)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8. “외국보험회사”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9. “보험설계사”란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社團)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4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10. “보험대리점”이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11. “보험중개사”란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12. “모집”이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13. “신용공여”란 대출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자금 지원적 성격인 것만 해당한다)이나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보험회사의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14. “총자산”이란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에서 영업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5. “자기자본”이란 납입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자본조정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합계액에서 영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합계액을 뺀 것을 말한다.
 16. “동일차주”란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및 이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7.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18. “자회사”란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조합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의 그 다른 회사를 말한다.
 19. “전문보험계약자”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

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보험계약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보험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보험회사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계약자는 일반보험계약자로 본다.

- 가. 국가
- 나. 한국은행
-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 라. 주권상장법인
-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0. “일반보험계약자”란 전문보험계약자가 아닌 보험계약자를 말한다.

1 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授受)하는 계약으로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을 말한다.

(1) 생명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시행령 제1조의2(보험상품) - 생명보험상품

② 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1. 생명보험계약
2. 연금보험계약(퇴직보험계약을 포함한다)

(2) 손해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제3보험은 제외: 질병·상해 및 간병)으로 발생하는 손해(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시행령 제1조의2(보험상품) - 손해보험상품

③ 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1. 화재보험계약
2. 해상보험계약(항공·운송보험계약을 포함한다)
3. 자동차보험계약
4. 보증보험계약
5. 재보험계약
6. 책임보험계약
7. 기술보험계약
8. 권리보험계약

- | | |
|------------|-------------|
| 9. 도난보험계약 | 10. 유리보험계약 |
| 11. 동물보험계약 | 12. 원자력보험계약 |
| 13. 비용보험계약 | 14. 날씨보험계약 |

(3) 제3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시행령 제1조의2(보험상품) - 제3보험상품

- ④ 법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1. 상해보험계약
 2. 질병보험계약
 3. 간병보험계약

(4) 보험상품에서 제외되는 항목

보험계약자의 보호 필요성 및 금융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시행령 제1조의2(보험상품)]

보험업법 제2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3.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

2 보험업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引受),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한다.

3 생명보험업

생명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손해보험업

손해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제3보험업

제3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6 보험회사

보험업법 제4조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 보험업법은 국내기업이나 외국기업이나에 대한 분류에 있어서 설립준거법설에 따름

7 상호회사

보험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보험업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보험계약자를 사원(社員)으로 하는 회사

8 외국보험회사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 보험업법에 의해 허가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는 보험회사가 아니며, 외국자본을 들여와 외국인에 의해 경영되더라도 보험업법상 허가를 받으면 보험회사에 해당함

9 보험설계사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社團)과 재단 포함)로서 제84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10 보험대리점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로서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11 보험중개사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12 모집

보험계약의 체결을 증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13 신용공여

대출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자금 지원적 성격인 것만 해당)이나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보험회사의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시행령 제2조(신용공여의 범위)]

신용공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대출
2. 어음 및 채권의 매입
3. 그 밖에 거래 상대방의 지급불능 시 이로 인하여 보험회사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
4. 보험회사가 직접적으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험회사에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
2.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해당 거래의 상황에 비추어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거래

14 총자산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에서 영업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시행령 제3조(총자산의 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총자산”에서 제외하는 자산

- 영업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보험계약 및 퇴직보험계약(법 제108조 제1항 제2호)
- 변액보험계약(법 제10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별계정 자산
- 자산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15 자기자본

납입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자본조정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합계액에서 영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합계액을 뺀 것을 말한다.[시행령 제4조(자기자본의 범위)]

자기자본을 산출할 때 합산하여야 할 항목 및 빼야 할 항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합산하여야 할 항목 :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등 보험회사의 자본 충실에 기여하거나 영업활동에서 발행하는 손실을 보전(補填)할 수 있는 것
- 빼야 할 항목 : 영업권 등 실질적으로 자본 충실에 기여하지 아니하는 것

16 동일차주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및 이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시행령 제5조(동일차주의 범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17 대주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18 자회사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민법」또는 특별법에 따른 조합 포함)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 포함)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의 그 다른 회사를 말한다.

19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가. 국가

나. 한국은행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1. 보험회사
2.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8.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금융회사
10. 「은행법」에 따른 은행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자금중개회사
1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1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1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기관에 준하는 외국금융기관

라. 주권상장법인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법 제83조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3. 법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 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
4.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금융감독원”이라 한다)
6.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및 같은 법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0.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11. 삭제
1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4.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15.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제12호와 제13호에 따른 기금은 제외한다)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16.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국내법인
1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 가. 외국정부
 - 나. 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
 - 다. 외국 중앙은행
18.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¹⁾ 자

다만, 다음의 전문보험계약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보험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보험회사가 동의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는 일반보험계약자로 본다.

- 지방자치단체
- 주권상장법인
- 외국금융기관
-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을 제외)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국내법인
-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0 일반보험계약자

“일반보험계약자”란 전문보험계약자가 아닌 보험계약자를 말한다.

- 1) 보험업 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영 제6조의2 제3항 제1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7-49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2. 기업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3. 「근로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7. 제7-49조 제2호 가목 1)에 해당하는 단체

제3절 보험계약의 체결

제3조(보험계약의 체결)

누구든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칙(보험자의 제한)

누구든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한다.

※ 일반인 및 보험모집종사자를 규제 대상으로 한 조항이다.

참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1조(금융상품판매업자들을 제외한 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상품 판매업자들을 제외하고는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해서는 아니 된다.

2 원칙에 대한 예외 조항(단서 조항) [시행령 제7조(보험계약의 체결)]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는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외국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역외보험계약(Cross - Boarder Insurance)이라고 하며 다음의 보험계약 체결·중개·대리는 허용 한다.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외국보험회사와 생명보험계약, 수출적하보험계약, 수입적하보험계약, 항공보험계약, 여행보험계약, 선박보험계약, 장기상해보험계약 또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대한민국에서 취급되는 보험종목에 관하여 셋 이상의 보험회사로부터 가입이 거절되어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대한민국에서 취급되지 아니하는 보험종목에 관하여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외국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기간이 지나기 전에 대한민국에서 그 계약을 지속시키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1호~제3호까지에 따라 체결할 수 있는 보험계약의 확인방법 및 외국보험회사의 대한민국에서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다른 법령에 근거 할때에는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의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공제상품, 우체국보험)



제 1 절

보험업의 허가

제4조(보험업의 허가)

- ①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생명보험업의 보험종목
 - 가. 생명보험
 - 나. 연금보험(퇴직보험을 포함한다)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2.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 가. 화재보험
 - 나. 해상보험(항공·운송보험을 포함한다)
 - 다. 자동차보험
 - 라. 보증보험
 - 마. 재보험(再保險)
 -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3. 제3보험업의 보험종목
 - 가. 상해보험
 - 나. 질병보험
 - 다. 간병보험
 -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보험종목의 재보험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의 보험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생명보험업이나 손해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의 전부(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재보험은 제외한다)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제3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④ 생명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의 전부(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재보험은 제외한다)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경제질서의 건전성을 해친 사실이 없으면 해당 생명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의 종목으로 신설되는 보험종목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⑤ 제3보험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제10조제3호에 따른 보험종목을 취급할 수 있다.
- ⑥ 보험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 상호회사 및 외국보험회사로 제한하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하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른 보험회사로 본다.
- ⑦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⑧ 제7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보험업 허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1 보험업법 허가의 개념

보험업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험업에 대해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여기서의 허가는 「회사설립의 허가」가 아니라 「사업의 허가」이며, 「보험종목별 허가」임에 주의하여야 한다. 보험(주식)회사의 설립과 관련된 규정은 「상법」 회사편에 규정되어 있다.

보험종목별 금융위원회 허가

‘사업의 허가’이지 ‘회사 설립의 허가’가 아님

※ 허가는 적법요건, 인가는 효력발생요건

2 보험업법 허가신청의 주체

보험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 상호회사 및 외국보험회사로 제한하며, 보험업법상의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이 법에 따른 보험회사로 본다.

허가받을 수 있는 자

주식회사, 상호회사, 외국보험회사

※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로 본다

3 보험업법 허가의 대상

(1) 보험종목별 허가

보험업의 허가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생명보험업의 보험종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보험 • 연금보험(퇴직보험 포함)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보험 • 해상보험(항공·운송보험 포함) • 자동차보험 • 보증보험 • 재보험(再保險)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시행령 제8조) 	<p>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보험 • 기술보험 • 권리보험 • 도난·유리·동물·원자력보험 • 비용보험 • 날씨보험
제3보험업의 보험종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해보험 • 질병보험 • 간병보험 	

※ 보험종목의 구체적 구분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허가대상 : 보험종목별 허가

(2) 보험종목별 허가에 대한 예외사항(허가에 대한 특칙)

- ① 재보험에 대한 허가 :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보험종목의 재보험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다만,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보험금의 상한액, 연간 총보험료 상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1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충족하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보험종목별로 허가 시 해당 보험종목의 재보험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 ② 제3보험종목에 대한 허가 : 생명보험업이나 손해보험업(보증보험 및 재보험을 제외)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의 전부에 관하여 보험업 허가를 받은 자는 제3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③ 신설보험종목에 대한 허가 : 생명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보증보험 및 재보험을 제외)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의 전부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경제질서의 건전성을 해친 사실이 없으면 해당 생명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의 종목으로 신설되는 보험종목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④ 제3보험업의 부가종목에 대한 허가 : 제3보험업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3보험의 보험종목에 부가되는 보험종목을 취급할 수 있다 .
- ⑤ 금융위원회는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⑥ 금융위원회가 허가에 조건이 붙은 보험업 허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2절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

제5조(허가신청서 등의 제출)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종목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관
2. 업무 시작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3. 경영하려는 보험업의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서(이하 “기초서류”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2개월(예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시행령 제9조 제4항)

※ 보험종목 추가 시는 정관은 제출하지 않아도 됨

1 허가신청서류

1. 허가신청서
2. 정관
3. 업무 시작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 포함)
4.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기초서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 기초서류
 - ㉠ 경영하려는 보험업의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 보험약관,
 - ㉢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서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대부분 보험업 허가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 ㉠ 주식회사 또는 상호회사인 경우(외국보험회사 제외)

- 가. 발기인회의의 의사록
 - 나. 임원 및 발기인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 다. 합작계약서(외국기업과 합작하여 보험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라. 자본금 또는 기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 마.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 바. 주주(상호회사의 경우에는 사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소유 주식 수(상호회사의 경우에는 출자지분)를 적은 서류
 - 사. 그 밖에 법 또는 이 대통령령에 따른 허가 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 ※ 다만, 취급하는 보험종목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외국보험회사의 경우

- 가.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적법한 보험업을 경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해당 외국보험회사가 속한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의 증명서
 - 나. 대한민국에서 외국보험회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이 호에서 “대표자”라 한다)의 대표권을 증명하는 서류
 - 다. 외국보험회사 본점의 최근 3년간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 라. 영업기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 마. 대표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 바.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 사. 그 밖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허가 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 ※ 다만, 취급하는 보험종목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나목, 라목 및 마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절

허가의 요건 등

제6조(허가의 요건등)

- ① 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외국보험회사 및 제3항에 따라 보험종목을 추가하려는 보험회사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금을 보유할 것
 - 2.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고 그 경영하려는 보험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物的) 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한 업무와 관련된 전문 인력과 물적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 4.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출자 능력과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추고 있으며, 건전한 경제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 ② 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제9조제3항에 따른 영업기금을 보유할 것
 - 2. 국내에서 경영하려는 보험업과 같은 보험업을 외국 법령에 따라 경영하고 있을 것
 - 3. 자산상황·재무건전성 및 영업건전성이 국내에서 보험업을 경영하기에 충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을 것
 - 4.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는 것
- ③ 보험종목을 추가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할 것(다만, 제1항제4호의 허가 요건은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추는 것
- ④ 보험회사는 제1항제2호의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고 보험가입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삭제 <2015. 7. 31.>
- ⑥ 삭제 <2015. 7. 31.>
- ⑦ 삭제 <2015. 7. 31.>
-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승인의 세부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보험업 허가요건

(1) 주식회사·상호회사의 경우(보험종목을 추가하려는 보험회사 제외)

- ① 자본금 또는 기금을 보유할 것(300억 이상, 보험종목 일부만 취급하는 경우 50억 이상)
- ②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物的) 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것
 - ㉠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고, 그 경영하려는 보험업을 수행하기 위함.
 - ㉡ 업무의 일부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한 업무와 관련된 전문 인력과 물적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간주함)

보험업법 시행령 제10조(허가의 세부요건 등) 제2항-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1. 손해사정업무
2. 보험계약 심사를 위한 조사업무
3.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한 보험사고 조사업무
4. 전산설비의 개발·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업무
5. 정보처리 업무

- ③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 ④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포함)가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충분한 출자 능력 및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건전한 경제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 임원결격사유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명시됨

(2) 외국보험회사의 경우

- ① 영업기금(30억원 이상)을 보유할 것
- ② 국내에서 경영하려는 보험업과 같은 보험업을 외국 법령에 따라 경영하고 있을 것
- ③ 자산상황·재무건전성 및 영업건전성이 국내에서 보험업을 경영하기에 충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을 것
- ④ “주식회사, 상호회사의 ②” 요건과 동일
- ⑤ “주식회사, 상호회사의 ③” 요건과 동일

(3) 보험종목을 추가하여 허가받는 경우

- ① 주식회사, 상호회사, 외국보험회사의 허가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대주주의 허가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10조(허가의 세부 요건 등) 제5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 대주주가 별표 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 같은 표 제1호라목 및 마목1)·3)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별표 1 제1호마목1) 중

-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본다.
2. 대주주가 별표 1 제4호 또는 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 같은 표 제1호마목1)·3) 및 제4호라목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별표 1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보고, 같은 표 제4호라목 중 “최근 3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3년간”으로, “해당 외국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해당 외국법인이 속한 국가의 사법기관으로부터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로 본다.
 3. 대주주가 별표 1 제5호(라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 같은 표 제1호마목 1)·3)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별표 1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본다.

- ② 외국보험회사의 경우는 허가요건에 대주주 요건이 부존재함.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보험업법 시행령 제10조(허가의 세부 요건 등) 제6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건전한 재무상태 :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능력과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상태
2. 사회적 신용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최근 3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나.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지점이나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후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을 것
 - 1) 업무의 전부정지 :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3년
 - 2) 업무의 일부정지 :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2년
 - 3) 지점이나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 해당 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 ㉠ 건전한 재무상태 :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 ㉡ 사회적 신용
 - ㉠ 최근 3년간 금융관계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 ㉢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다만, 법원판결 부실책임 X 또는 경제적 책임 부담등 금융위원회 고시 기준 해당하는 자는 제외)
 - ㉣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지점 폐쇄, 업무 정지 조치를 받은 후 일정기간이 지났을 것(업무전부정지 : 3년, 업무 일부정지 : 2년, 지점폐쇄 등 : 1년)

2 허가요건 유지의무

(1) 물적(物的) 시설 유지

허가요건 중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物的) 시설에 대한 요건은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보험회사가 허가를 받은 이후 전산설비의 성능향상이나 보안체계의 강화 등을 위하여 그 일부를 변경한 경우는 물적(物的) 시설을 유지한 것으로 본다.

(2) 예외사항

다만,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고 보험가입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10조(허가의 세부 요건 등) 제8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보험계약자의 이익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해당 보험회사의 경영효율성 향상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정보 보호에 차질이 없을 것
2. 보험서비스 제공의 지연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의 우려가 없을 것
3. 보험계약과 관련한 신뢰성 있는 보험통계를 제때에 산출할 수 있을 것
4. 해당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검사 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제 4 절 예비허가

제7조(예비허가)

- ① 제4조에 따른 허가(이하 이 조에서 “본허가”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예비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예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④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를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예비허가의 조건을 이행한 후 본허가를 신청하면 허가하여야 한다.
- ⑤ 예비허가의 기준과 그 밖에 예비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 예비허가

본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예비허가 심사 및 통지

2개월 이내 심사 통지

※ 보험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서는 1개월 이내 심사 통지 명시

(2) 예비허가 통지기간 연장

- ① 신청서 및 첨부서류 중 내용이 불명확하여 사실 확인 및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 ② 이해관계인 등의 이해 조정을 위하여 공청회 개최 또는 신청인의 소명이 필요한 경우
- ① 또는 ② 사유가 있는 경우 한 차례만 3개월 범위에서 통지기간 연장 가능
 예비허가 시 조건 부여 가능하며, 예비허가를 받은 자가 예비허가 조건을 이행한 후 본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는 이를 허가하여야 함

(3) 절차

예비허가신청 → 심사 → 예비허가(조건부여 가능) → 조건 이행 완료 → 본허가 신청(예비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본허가 신청기한 연장은 승인 필요) → 본허가

※ 예비허가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님

 참고

허가의 취소

1. 보험회사의 영업 전부 정지 또는 보험업의 허가 취소

보험업법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 전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의 내용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영업의 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4.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

보험업법 제74조(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

- ① 금융위원회는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에 대하여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합병, 영업양도 등으로 소멸한 경우
 2. 위법행위, 불건전한 영업행위 등의 사유로 외국감독기관으로부터 제134조제2항에 따른 처분에 상당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3. 휴업하거나 영업을 중지한 경우
- ② 금융위원회는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당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보험업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영업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그 본국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보험업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은 그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5절 상호 또는 명칭

제8조(상호 또는 명칭)

- ① 보험회사는 그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주로 경영하는 보험업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한다.
- ② 보험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 또는 명칭 중에 보험회사임을 표시하는 글자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주로 경영하는 보험업의 종류를 표시(예: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 ② 보험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 또는 명칭 중에 보험회사임을 표시하는 글자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됨

제6절 자본금 또는 기금

제9조(자본금 또는 기금)

- ① 보험회사는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함으로써 보험업을 시작할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가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험종목의 일부만을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자본금 또는 기금의 액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집수단 또는 모집상품의 종류·규모 등이 한정된 보험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함으로써 보험업을 시작할 수 있다.
 1.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을 하는 보험회사(제2호에 따른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는 제외한다):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금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2.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보험금의 상한액, 연간 총보험료 상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1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③ 외국보험회사가 대한민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기금을 제1항 또는 제2항의 자본금 또는 기금으로 본다.

자본금이란 주식회사의 주주가 투자한 자금으로서 채권자 또는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정한 일정한 금액을 말하며, 기금이란 보험업법 상의 상호회사의 기금으로 주식회사의 자본금과 유사한 개념이나 기금 각출자의 채권이므로 사업자금이면서 부채라 할 수 있다.

보험업법에서 최저자본금 또는 최저기금을 두는 이유는 보험회사 설립초기에 지급능력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보험회사는 영업을 개시하여 보험을 인수하는 순간부터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에 대한 책임이 발생한다. 설립초기의 자본금 또는 기금은 이러한 책임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자본금은 또한 기본적으로 회사 설립초기에 인력 및 물적 기본시설을 갖추는 데도 필요하다. 즉, 보험에 관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사무실 등 영업시설을 갖추는데 설립초기의 지급능력에 문제가 없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최소한의 자본금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1 국내보험회사의 최소납입 한도

(1) 원칙

보험회사는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주식회사) 또는 기금(상호회사)을 납입함으로써 보험업 시작할 수 있다.

※ 자본금 또는 기금은 영업개시 요건

(2) 예외 조항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종목의 일부만을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시행령 제12조(보험종목별 자본금 또는 기금)]으로 자본금 또는 기금의 액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보험 : 200억원 • 연금보험(퇴직보험 포함) : 20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보험 : 50억원 • 권리보험 : 50억원 • 화재보험 : 100억원 • 책임보험 : 100억원 • 해상보험(항공, 운송보험 포함) : 150억원 • 자동차보험 : 200억원 • 보증보험 : 300억원 • 재보험(再保險) : 30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해보험 : 100억원 • 질병보험 : 100억원 • 간병보험 : 100억원

300억	200억	150억	100억	50억
보증보험 재보험(再保險)	생명보험 연금보험 (퇴직보험 포함) 자동차보험	해상보험 (항공, 운송보험 포함)	화재보험 책임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기술보험 권리보험 기타 보험종목

※ 위의 보험종목 이외의 보험종목의 최소납입자본금(기금)은 50억원

※ 위의 재보험은 재보험을 전문(專業)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에 한정하여 적용되며, 취급하고 있는 보험종목에 대한 재보험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보험종목의 자본금요건만 충족하면 됨

(3) 둘 이상의 보험종목 영위

각 보험종목의 자본금 또는 기금의 합계액. 단, 합계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300억원

(4)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

보험종목별 자본금 또는 기금의 3분의 2 상당액 이상을 자본금 또는 기금으로 납입해야 함

※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란 총보험계약건수 및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90 이상을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회사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가 이 모집비율을 위반한 경우는 동 비율을 충족할 때까지 통신수단 외의 방법에 의한 모집을 금지됨

(5)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 10억원 이상 20억원

※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란 보험업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보험금의 상한액, 연간 총보험료 상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써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보험회사

1.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 다음 각 목의 보험상품
 - 가. 생명보험상품 중 생명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상품
 - 나. 손해보험상품 중 책임보험계약, 도난보험계약, 유리보험계약, 동물보험계약, 비용보험계약 또는 낱씨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상품
 - 다. 제3보험상품 중 상해보험계약 또는 질병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상품
2. 보험기간 :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3. 보험금의 상한액 : 5천만원
4. 연간 총보험료 상한액 : 500억원

2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의 최소납입한도

영업기금 : 30억원 이상(영업기금을 자본금 또는 기금으로 본다)

제 7 절 **보험업 경영의 제한**

제10조(보험업 경영의 제한)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겸영(兼營)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명보험의 재보험 및 제3보험의 재보험
2. 다른 법령에 따라 겸영할 수 있는 보험종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3보험의 보험종목에 부가되는 보험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겸영(兼營)하지 못한다. 이 생·손보 겸영금지 규정은 보험업법 제정 시부터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조항이다. 미국의 경우 생·손보 겸영을 금지하고 있으나, 상해보험과 건강보험은 생·손보사 겸영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생·손보의 겸영을 제한하고 있으며 질병, 상해보험 등은 겸영을 허용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1982년까지 생·손보 겸영이 폭넓게 허용되다가 1982년부터 원칙적으로 겸영을 금지하였으며, 사고에 의한 상해·사망보험 및 보험기간 5년 이하 질병보험 등은 겸영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생·손보의 겸영은 보험회사의 경영의 건정성 유지 측면이나 계약자 보호차원에서 금지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이 현재까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나 우리나라도 자회사를 통한 겸영이나 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겸영은 허용하는 추세이다.

1 생·손보 겸영의 금지

생·손보 겸영 제한 : 원칙적 제한, 단, 다음 사항은 예외적으로 허용

2 겸영금지의 예외(겸영 가능 보험종목)

(1) 생명보험의 재보험 및 제3보험의 재보험

원래 재보험은 손해보험 영역이므로 생명보험회사와 제3보험회사가 경영할 수 없는 보험종목이나 예외적으로 겸영을 허용한 것이다.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겸영이 가능한 보험종목

다른법령에 겸영을 허용하고 있는 보험종목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은 겸영이 허용된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15조(겸영 가능 보험종목)

- ① 법 제1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이란 다음 각 호의 보험을 말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재보험과 보증보험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일부만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와 제3보험업만을 경영하는 보험회사는 겸영할 수 없다.
 - 1.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설정하는 계약
 -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및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보험계약

- ① 연금저축계약
- ② 퇴직연금보험계약(퇴직보험계약)
- ③ 예외 - 단,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재보험과 보증보험 제외) 일부만 취급 또는 제3보험업만 영위하는 회사는 겸영 불가)

(3) 제3보험의 보험종목에 부가되는 보험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제3보험의 특약 형식으로 담보하는 보험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을 말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15조(겸영 가능 보험종목)

- ② 법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3보험의 보험종목에 부가되는 보험”이란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제3보험의 특약 형식으로 담보하는 보험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을 말한다.
 - 1. 보험만기는 80세 이하일 것
 - 2. 보험금액의 한도는 개인당 2억원 이내일 것
 - 3. 만기 시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납입보험료 합계액의 범위 내일 것

- ① 보험만기 80세 이하
- ② 보험금액한도 개인당 2억원 이내
- ③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합계액 범위 내

제 8 절 **보험회사의 겸영업무**

제11조(보험회사의 겸영업무)

보험회사는 경영건전성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제1호 또는 제3호의 업무를 하려면 그 업무를 시작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업무로서 해당 법령에서 보험회사가 할 수 있도록 한 업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으로서 해당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등이 필요한 금융업무
3. 그 밖에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금융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1 보험회사 타업무 겸영금지

보험회사가 다른 업무를 취급할 경우 보험업에 전념하기 어렵고, 다른 업무에 따른 위험이 보험계약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을 이유로 그동안 보험회사의 타 업무겸영은 엄격히 제한되어 왔다. 그러나 금융업의 겸업화가 진전되면서 보험회사도 업무 다각화를 통하여 산업을 선진화하고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금융겸업화 추세에 부응하여 2003년 법 개정 시에는 겸영금지를 대폭 완화하는 규제완화 조치를 단행하였다.

2 보험회사 겸영허용 업무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업무로서 해당 법령에서 보험회사가 할 수 있도록 한 업무

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겸영업무의 범위)

- ① 법 제11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
 2.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채권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
 4.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결제중계시스템(이하 이 호에서 “결제중계시스템”이라 한다)의 참가기관으로서 하는 전자자금이체업무와 보험회사의 전자자금이체업무에 따른 자금정산 및 결제를 위하여 결제중계시스템에 참가하는 기관을 거치는 방식의 전자자금이체업무는 제외한다]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신고만으로 가능 : 이 업무들은 시행령상 이미 보험회사에 그 업무의 취급을 허용하였으므로 별도의 절차 (인·허가) 없이 겸영 가능

- ① 해당법령에서 규정한 유동화자산 또는 채권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
- ② 전자자금이체업무
- ③ 본인신용정보관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으로서 해당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등이 필요한 금융업무

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겸영업무의 범위)

② 법 제1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에 따른 투자자문업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7항에 따른 투자일임업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신탁업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
7.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6호에 따른 외국환업무
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해당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이 필요한 업무 : 이 업무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등을 한 후에 겸영할 수 있는 업무들이다.

- ①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 ②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
- ③ 외국환업무
- ④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기존 보험회사 직원 대상 “종업원퇴직보험”업무 포함)

(3) 그 밖에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금융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겸영업무의 범위)

③ 법 제1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른 금융기관의 업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수행방법 또는 업무 수행을 위한 절차상 본질적 요소가 아니면서 중대한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위탁한 업무를 말한다.

기타 :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금융업무로 신고로서 겸영이 가능하다.

- ① 다른 금융기관의 업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 ② 중대한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위탁한 업무
- ③ 아직 금융위원회가 이를 고시하지 않고 있다

3 신고의무

겸영업무를 시작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절

보험회사의 부수업무

제11조의2(보험회사의 부수업무)

- ① 보험회사는 보험업에 부수(附隨)하는 업무를 하려면 그 업무를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공고된 다른 보험회사의 부수업무(제3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것은 제외한다)와 같은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부수업무를 할 수 있다.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하는 부수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부수업무를 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치는 경우
 2. 보험계약자 보호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
- ④ 제3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은 그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받은 부수업무 및 제3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 부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현행법은 부수업무의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보험회사가 부수(附隨)업무를 하려면 그 업무를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신고한 부수업무에 대하여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2010년 법 개정 전까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열거주의(positive system) 방식으로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0년 7월 법 개정으로 부수업무 범위에 대한 제한이 폐지되고 일종의 포괄주의(negative system) 방식으로 전환 하였다.